

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. 11. 9 선고 2021가단214424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 성남시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탐 담당변호사 박정익

피고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의 담당변호사 정재현

변론 종결 2021. 9. 7.

판결 선고 2021. 11. 9.

주 문

1.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"이 사건 부동산"이라 한다)에 관하여 2015. 12. 19.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6. 2. 26. 접수 제2785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

원고는 B의 채권자로서 B와 피고 사이에 2015. 12. 19. 체결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라 주장하면서 2021. 5. 4. 이 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위 증여계약의 취소와 위 증여계약에 따라 2016. 2. 26. 피고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. 그러나 사해행위 취소의 소는 민법 제406조 제2항에 따라 "법률행위있는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"하여야 하고, 이는 제소기간으로서 제척기간에 해당한다(대법원 2002. 7. 26. 선고 2001다73138, 73145 판결 등 참조). 또한 사해행위 취소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만 청구할 수 있으므로(대법원 1995. 7. 25. 선고 95다8393 판결 등 참조), 그 외에 소송상의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하거나 재판 외에서 행사하는 등의 방식은 사해행위 취소의 행사방법으로 허용되지 않고, 그 제소기간의 기산점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있었던 날임이 위 규정상 명백하다.

그런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, 원고가 사해행위로서 취소를 구하는 B와 피고 사이의 위 증여계약은 2015. 12. 19. 체결되었고, 원고는 그때부터 5년이 경과한 2021. 5. 4.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, 이 사건 소는 민법 제406조 제2항에서 정한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.

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16. 2. 26.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인 2021. 2. 25. 원고가 피고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하였으므로, 이 사건 소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지 만, 이는 위 제소기간의 기산점을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의 시점이 아닌 그에 따른 등기 시점으로 보고 그 사해행위 취소를 소의 제기가 아닌 보전처분 신청의 형태로도 행사할 수 있음을 전제한 것으로서, 앞서 본 판단과 배치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.

2. 결론

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.

판사이경호

별지